행정무게 더욱 아쉬운 어항건설

해양센터 개념의 '종합적 어항어촌 건설'

**일본은 제9차 어항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이도 부족하여 최근에는 내년도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수산청 기구에서 기존의 어항부를 어항어촌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이것은 명칭 변경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어항개발의 개념을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시말해 어항을 제외한 어촌개발이나, 어촌을 제외한 어항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성큼 다가온 21세기의 바다는 단순히 물고기나 잡고,
양식이나 하는 그런 1차 생산적인 것에 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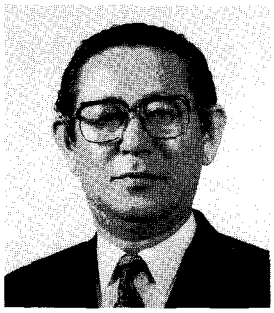

박 현 상
〈목포수협 조합장〉

희망과 용기준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

해양수산부의 발족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은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수산업은 늘 정부의 하부구조로 운용되어 왔고, 이런 사실은 수산인들을 위축시켰으며 때로는 패배주의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똑같은 1차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국가와 국민을 지탱시키는 근본산업으로 간주되는 반면, 수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부의 주요정책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도 겸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심도 측면에서 볼때 수산업과 농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추곡수매가 이야기가 나오면 여야할 것없이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정부 역시 농민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이해가 되지않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표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수산업과 어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혹은 차별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수산행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현재와 같은 수산업의 피폐현상을 불러 온 것이다.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어찌 감정이 없겠는가. 그 감정의 표출은 이어, 즉 어촌을 떠나는 현상으로 대변됐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60만 어민이니 하고 헤아리던 숫자가 지금은 불려서 40만이라고 해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해양수산부가 독립된 부처로 발족된 것이다. 물론 부처명칭의 앞에 해양이 먼저 붙긴 했지만 해양도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니, 그건 그리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핵심에서 저만큼 벗어나 있던 수산업을 행정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것만 해도 감지덕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해양수산부 발족에 거는 다음 수순은 두말할 나위없이 기대감일 것이다. 과거와는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 분명하고, 또한 달라져야할 당위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어업인의 감정은 대체로 이렇다. 한마디로 이젠 우리를 돌보고 이끌어 나가면서 관장할 우리의 부처가 생겼으니 그동안 미흡하게 여겨졌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과감히 채워주는 행정적인 무게를 실어달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60만 어민이니 하고 헤아리던 숫자가 지금은 불려서 40만이라고 해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해양수산부가 독립된 부처로 발족된 것이다. 물론 부처명칭의 앞에 해양이 먼저 붙긴 했지만 해양도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니, 그건 그리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일본과의 수산업 격차 관심과 행정력 차이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바다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고전적인 금언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가까운 일본, 우리에게 때로는 질시와 증오의 대상으로, 또 때로는 경쟁의 대상이 되었던 그 일본은 이제 세계 최고, 최대 강국의 하나가 되었다. 어쨌거나 그 이면엔 수산업도 최고, 최대란 말을 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우리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섬나라이므로 4면이 바다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3면이 바다이니 조건면에서는 그리 크게 뒤질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날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이 벌려놓은 그 간격의 원인은 무엇일까.

잘라 말해서 관심과 행정력의 차이였다. 그들이 쉴새없이 「바다의 목장화」를 부르짖으며 새로운 텃밭으로 바다를 일구고 있는 동안 우리는 눈에띄는 전시행정 위주로 수산업을 이끌어 왔으니 어쩌면 그러한 차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항건설이다. 「빈독에 물붓기」 식으로 깊고 깊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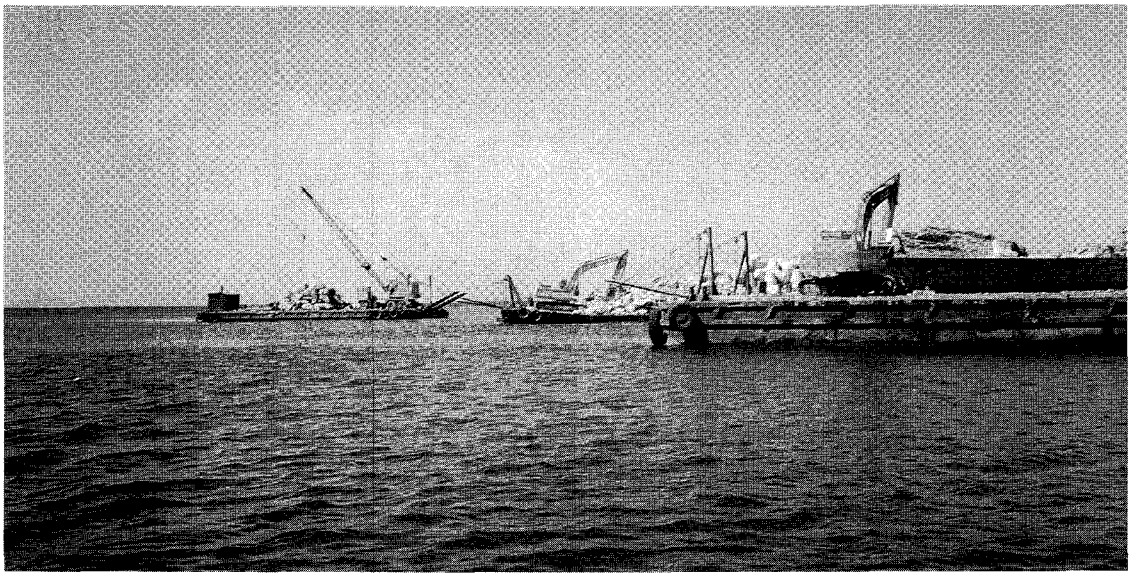

다에 돌을 집어넣어 본들 우선 표시가 나지 않는다.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간다. 차라리 이 돈으로 교량이나 빌딩을 하나 세우면 표시가 나고, 무엇보다 단기간에 외형적인 생색이 나타난다. 무엇 때문에 당장 효과가 없는 바다에다 돌을 던지랴.

반면 일본은 이미 1970년대에 어항의 기본시설을 완성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눈을 돌린 곳이 어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는 채 반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세계 제일의 수산대국이란 결실로 나타났으니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와 더불어 일본은 제9차 어항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이도 부족하여 최근에는 내년도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수산청 기구에서 기존의 어항부를 어항어촌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이것은 명칭 변경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어항개발의 개념을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시말해 어항을 제외한 어촌개발이나, 어촌을 제외한 어항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성큼 다가온 21세기의 바다는 단순히 물고기나 잡고, 양식이나 하는 그런 1차 생산적인 것에 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생산·가공·유통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부수하여 레저·스포츠같은 위락단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해양센터라는 개념의 어항어촌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원용하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러나 당연히 해양수산부가 발족함으로써 이러한 현대적 개념의 어항어촌 건설에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됐다.

어항행정에 정부차원의 무게 실려야

종래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관장함으로써 서로 상충됐던 과제가 바다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연구되고 논의됨으로써 취약한 부분의 보완과 보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1969년 어항법 제정이래 24년만에 개정돼 1993년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어항법 아래에서의 행정적 교통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지정어항의 확대이다.

지정어항 확대는 어쩌면 수산인들에게는 지상명제이면서도 그 진행속도가 더뎌 안타까움을 주는 부분이다.

둘째는 어항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항만법상의 연안항을 어항법에 의한 어항으로 돌리는 문제이다.

과거에는 항만청과 수산청이 별개의 조직으로 각각 다른 부처의 소관아래 놓임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나 지금은 하나의 해양수산부 아래 뭉쳐져 있으므로 필요이상의 힘 겨루기나 부처이기주의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마음먹기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셋째는 어민이 실제로 가장 개발을 갈망하고 있는 내무부 소관의 소규모 어항을 어항법에 의한 어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어찌 보면 소규모 어항은 실무적인 차원에서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 일사분란한 행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똑같이 어민이 주 이용자임에도 어항에 따라 소관이 다르다면 개발·보수유지 등 혼란이 올 뿐만아니라 일관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해양수산부의 조직이나 인적구성상 이게 불가능하다면 외부 용역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어항법 제38조에 따르면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항협회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런 산하단체를 1백% 활용하는 것이 정책적인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시설 완공후의 정비계획 수립이다.

어항정비계획에 관해서는 앞서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계획적이면서 순차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 해양수산부의 조직이나 인적구성상 이게 불가능하다면 외부 용역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어항법 제38조에 따르면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항협회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런 산하단체를 1백% 활용하는 것이 정책적인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밖에 민간사업자 등을 통한 어항어촌개발도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내용이다.

문제는 이러한 어항행정에 정부 차원의 무게가 실려야만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수산인·어항인·어업인 모두가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